

중 국

[판례 분석]

공개정보를 활용한 강의자료의 편집저작물 성립 요건

2026. 08. 26.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당 전국대표대회 보고서, 당의 헌장(党章), 당의 규약(党规) 등 공개정보를 소재로 한 강의자료도 정보의 선택과 배열에 편집자의 개성적 판단이 구현되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음. 이때 선택은 다수의 자료 가운데 편집자의 편집 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고, 배열은 그렇게 선택된 정보를 단계적·연관적인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함.

1. 현황

중국의 기업 직무교육·전문연수 과정에서는 강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강의자료 등 교육 콘텐츠를 수강생에게 제공하고, 수강생이 이를 학습 후 별도의 강의 활동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그 중에서 국유기업의 당건(党建, 당 조직 건설) 업무 관련 교육에서는 당장·당규 등 공개된 정책정보를 활용하여 강의자료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자료의 저작물성 및 그 이용범위가 문제될 수 있음. 특히 이러한 자료의 무단 복제·수정·판매가 교육서비스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행위자인 법정대표와 회사 사이의 책임 귀속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음. 본문에서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작성된 국유기업 당건 업무 교육 강의자료의 무단 이용 사건을 통해 편집저작물의 성립 요건과 저작권침해 판단기준을 살펴봄.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5) 沪0116民初14266号	
관할 법원	1심	상하이시 진산구 인민법원(上海市金山区人民法院)	
당사자	A 씨		1심: 원고
	B 회사, C 씨		1심: 피고
핵심 쟁점	1심	1. A 씨가 권리를 주장하는 작품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B 회사와 C 씨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결과	1심	1. A 씨가 권리를 주장하는 작품은 저작물에 속함. 2. B 회사와 C 씨의 행위는 A 씨의 저작권을 침해함. B 회사와 C 씨는 저작권 침해를 중지해야 하고, A 씨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3만 위안을 연대하여 배상해야 함. B 회사와 C 씨는 A 씨에게 서면으로 사과해야 함.
관계 법령		· 저작권법(著作权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16호, 제15조, 제53조 제1호, 제54조 제(2)항 및 제(3)항 ·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25조 제2항, 제26조
최종 판결일		2026년 2월 4일

(1) 사건 개요

A 씨는 국유기업의 당건 업무와 사업의 융합을 주제로 공개된 당건 자료와 도표·이미지·문자 등을 선택하고 배열하여 세 종류의 교육용 강의자료(이하 "사건 강의자료"라 함)를 제작하였음. A 씨는 D 회사에 사건 강의 관련 자료의 판매를 허락하였고, C 씨는 D 회사를 통해 사건 강의 관련 자료와 관련 영상 등 사건 강의 관련 자료를 구매하였음. 이후 C 씨는 당건 업무 관련 강의자료(이하 "분쟁 강의자료"라 함)를 제작하여 외부 강의에 사용하였고 일부 자료를 온라인으로 판매하였음. B 회사는 C 씨가 법정대표인 교육기술회사로서 관련 강의사업과 홍보를 수행하였음. A 씨는 분쟁 강의자료가 사건 강의자료의 정보 선택과 배열 및 전체 구성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B 회사와 C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2) 핵심 쟁점

본 안건에서 A 씨는 사건 강의자료가 공개된 당건·정책자료를 특정 교육 목적에 맞게 선별·배열하고 도형, 이미지 등을 결합한 자료가 편집저작물이며 C 씨가 무단으로 분쟁 강의자료를 제작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함. 이에 B 회사와 C 씨는 자료가 공공영역 정보와 통상적 강의 구조에 불과해 독창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업계 관행상 관련 자료 이용이 허용된다고 항변함. 또한, B 회사는 분쟁 강의자료 제작·판매 행위가 C 씨의 개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B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였음.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본 안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음.

- ① 사건 강의자료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되고 그 저작권이 A 씨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② 분쟁 강의자료가 사건 강의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 ③ B 회사가 C 씨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1) 사건 강의자료의 편집저작물 성립 및 저작권 귀속

① 저작물 성립 여부

중국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은 여러 저작물이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기타 자료를 모은 결과물 중 그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에 독창성이 구현된 저작물을 의미함. 따라서 강의자료가 편집저작물인지 판단할 때에는 개별 소재가 그 자체로 저작물인지보다 작성자가 소재를 선택하거나 배열하는 과정에서 독창적 판단을 하였는지를 심사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 강의자료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첫째, 사건 강의자료에 포함된 문자 내용은 당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와 당장·당규 등 공개정보에서 비롯되었으나, A 씨가 국유기업의 당건과 사업의 융합이라는 업무상 필요에 맞추어 다수의 당건 자료 중 관련 정보를 선별하였으므로 정보 선택에 독창성이 인정됨. 둘째, 사건 강의자료의 목차는 “당의 역사에서 당건과 업무 융합의 기원 추적 → 세계관과 방법론의 관점에서 당건과 업무 융합의 핵심 업무 요령 도출 → 기업 개혁·발전의 실제에 비추어 당건과 업무 융합의 업무 방법 파악 → 혁신의 관점에서 당건과 업무 융합의 현장 적용 모델 모색”이라는 네 개의 경로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배열은 단계적·연관적·구조적 특성을 가지므로, 배열에도 독창성이 인정됨. 셋째, A 씨가 도형·색상·이미지·문자 등의 조합과 연결 및 순서를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본래 직접적 관련이 없던 정보들을 하나의 통일된 강의자료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정보수집을 넘어 작성자의 개성적 판단이 드러나는 결과물임.

② 권리 귀속

권리 귀속에 대해서는 저작권 관련 초고, 원본, 합법적 출판물, 저작권등록증, 인증기관의 증명, 권리취득계약 등은 권리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전제로 함. A 씨는 사건 강의자료의 문서자료와 실제 강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창작과정과 구성의 사고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 이에 반하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A 씨가 사건 강의자료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됨.

2) 분쟁 강의자료의 저작권침해 성립 여부

① 접근 가능성

A 씨가 사건 강의자료를 완성한 뒤 강의를 통하여 이를 공개하였고, C 씨가 사건 강의자료를 학습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C 씨가 D 회사를 통해 사건 강의자료와 영상 등 관련 자료를 구매한 사실을 고려하면 C 씨에게 사건 강의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존재함.

② 실질적 유사성

분쟁 강의자료와 사건 강의자료의 10여 장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특히 정보의 선택 방식과 배열 방식 및 전체적인 제시 효과가 고도로 유사하므로 양자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함.

이어 분쟁 강의자료는 C 씨가 사건 강의자료를 토대로 수정하여 제작한 것이고 C 씨가 사건 강의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한 뒤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하였음. 이러한 행위는 사건 강의자료에 대한 A 씨의 성명권, 수정권,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함.

인증과정 자료를 구매한 수강자는 업계 관행상 이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고, A 씨가 이용범위를 서면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사용이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C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C 씨가 그러한 업계 관행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A 씨도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였으므로 C 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또한 저작권의 본질이 사전 허락권이 아니라 사후 금지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자는 타인의 수정·복제·배포를 금지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고 합리적 이용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타인의 편집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3) B 회사와 C 씨의 공동침해 및 연대책임

B 회사와 C 씨 사이의 관계 및 침해행위의 실행방식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동침해를 인정함.

첫째, C 씨는 B 회사의 법정대표이고 B 회사의 주주는 C 씨와 그의 배우자 두 명이었으며, C 씨는 장기간 강의업에 종사하면서 B 회사가 실시한 침해행위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 둘째, C 씨는 외부강의와 자료판매를 개인 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B 회사의 주된 영업이 각종 강의서비스 제공이고 대외홍보에서도 C 씨 개인이 아니라 회사 명의로 고객을 모집한 사정이 확인됨. 그 외에도 C 씨는 세무기관에 강의를 제공한 전후의 계약과 대금 지급 자료 등 자신의 행위가 개인 행위임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셋째, C 씨는 개인계좌를 사용하여 회사의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등 C 씨 개인계좌 거래와 B 회사 명의 거래가 혼재되어 있음.

법인의 법정대표가 법인의 침해행위를 알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 실행에 참여한 경우 해당 행위에는 법인의 의사와 법정대표의 의사가 함께 반영되므로 법정대표와 법인이 공동으로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본 안건에서는 C 씨가 주관적으로 저작권침해의 고의를 가지고 자신이 지배하는 B 회사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침해행위를 실행하였고, B 회사가 객관적으로 독립인격을 상실하여 C 씨의 저작권침해를 수행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B 회사와 C 씨가 공동침해를 구성하고 연대책임을 부담함.

3. 판례분석

1) 공개정보를 활용한 강의자료의 편집저작물 성립

편집저작물의 성립 여부는 개별 소재 자체의 저작물성과 그 소재를 선택·배열하여 형성한 편집물의 저작물성을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저작권법> 제15조는 여러 저작물이나 그 일부분 뿐만 아니라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나 기타 자료도 편집의 소재가 될 수 있으며 그 선택 또는 배열에 독창성이 구현된 경우 편집저작물로 인정함. 따라서 편집되는 개별 소재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와 그 소재를 이용하여 구성한 편집물에 독창성이 있는지는 구별되는 문제임.

본문 판례에서도 법원은 편집되는 소재 자체가 저작물인지보다 정보의 선택 또는 배열에 독창성이 구현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음. 법원은 사건 강의자료가 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와 당장·당규 등 당건 분야의 공개정보를 소재로 하였더라도 A 씨가 국유기업의 당건과 업무 융합이라는 필요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선별한 점에서 선택의 독창성을 인정함. 또한 강의 내용을 네 개의 단계적, 연관적, 구조적 경로로 구성한 점에서 배열의 독창성을 인정하였고 도형, 색상, 이미지, 문자 등을 조합 및 배열하여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정보를 하나의 강의자료로 구성한 점도 편집자의 개성적 판단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보았음. 이에 사건 강의자료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이러한 판단은 민국 시기의 신문 내용을 편집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¹⁾와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짐.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민국 시기 신문 지면과 신문명, 발행 기간, 발행지, 발행자, 판형 등의 서지정보 자체에는 독창성이 없고, 신문목록에 지면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표현이 아니라 방법의 영역이라고 판단함. 그러나 약 8,000종 가운데 2,000여 종의 신문을 선별하고, 각 신문의 대표 호와 지면을 선택하면서 일부 지면을 삭제·추가한 과정에는 편집자의 학술적 배경과 전문적 수준에 기초한 독특한 선택이 있다고 보아 선택 부분에 비교적 높은 독창성을 인정함. 반면 행정구역과 발행 시기에 따른 배열에는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두 사례를 비교하면 <저작권법> 제15조의 '선택 또는 배열'에 따라 선택과 배열을 구별하여 독창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됨. 비교 사례에서는 배열에는 독창성이 없었지만, 구체적인 선택에 독창성이 인정된 반면 본문 판례에서는 정보의 선택과 네 단계의 배열에 독창성이 인정되었고 도형, 색상, 이미지, 문자 등의 구체적인 편집방식도 편집자의 개성적 판단을 확인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음.

다만 독창성을 설명한 구체성에는 두 판결 사이에 차이가 있음. 비교 사례에서는 약 8,000종에서 2,000여 종을 선택하고 대표적인 호 및 지면을 다시 선별하며, 일부 지면을 삭제·추가한 과정과 이에 필요한 학술적 배경과 전문성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함. 이에 비해 본문 판례는 다수의 당건 자료 가운데 관련 정보를 선별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나 후보 자료의 전체 범위나 구체적인 선별기준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제시하지 않음. 따라서 두 판결은 모두 선택의 독창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 이유를 제시한 구체성에는 차이가 있음. 그러나 편집저작물의 독창성 판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선택 또는 배열이라는 형식적 요소의 존재 자체보다 그 선택 및 배열 과정에 편집자의 개성적 판단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었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음.

2) 편집저작물의 침해 판단과 이용허락 범위

편집저작물의 침해 판단에서는 원고 저작물에서 독창성이 인정된 요소가 피고 저작물에 실제로 이용되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됨. 본문 판례에서 법원은 A 씨가 사건 강의자료를 강의의 통해 공개하였고 C 씨도 이를 학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사건 강의자료를 접촉·인지할 기회가

1) (2022)京73民终4681号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사건 강의자료와 분쟁 강의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10여 장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특히 정보의 선택·배열 방식 및 전체적인 제시 효과가 고도로 유사하다고 보아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였음. 또한 A 씨는 D 회사에 사건 강의 관련 자료의 판매를 허락하였고, C 씨는 D 회사를 통해 강의자료와 영상 등을 구매하였음. 법원은 분쟁 강의자료가 사건 강의자료를 기초로 수정하여 형성되었고, C 씨가 이를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하여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음.

이는 저작물성 판단에서 독창성이 인정된 정보의 선택과 배열 방식이 침해 판단 단계에서도 주요 비교요소가 되었음을 보여줌. 다만 침해단계에서는 여기에 전체적인 제시 효과의 유사성도 함께 고려되었음.

앞서 소개한 비교 사례에서는 이러한 대응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남.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도서가 원고의 원고(原稿)와 배열순서 및 일부 수록 호에서 차이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선택한 신문 지면과 서지정보를 높은 비율로 이용하여 편집저작물의 독창적인 표현 부분을 이용하였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선택의 측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함. 본문 판례 역시 정보의 선택과 배열 방식의 유사성을 실질적 유사성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교 사례와 공통점이 있음. 다만 본문 판례는 10여 장의 기본적 동일성과 선택, 배열 방식, 전체적인 제시 효과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으며, 개별 슬라이드의 보호 요소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다는 차이가 있음.

한편 사건 강의 관련 자료의 구매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수정, 복제, 배포 권한은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음. C 씨는 D 회사를 통해 강의자료와 영상 등을 구매하였으나 C 씨 측은 이를 근거로 인증과정 자료를 구매하면 복제가 묵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업계 관행이 있고 A 씨도 이용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이용이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법원은 C 씨가 이러한 업계 관행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A 씨도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또한 법원은 '저작권의 본질은 사전 허락권이 아니라 사후 금지권'이라고 언급하면서 A 씨가 사건 강의자료에 대한 타인의 수정, 복제, 배포를 금지할 수 있고 피고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합리적 이용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타인의 편집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해당 항변을 배척하였음.

한편 D 회사는 소송에서 A 씨로부터 사건 강의와 관련된 인증 과정을 판매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업계 관행상 인증 과정을 수강한 후, 해당 강의자료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강의할 수는 있지만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다만 이는 법원이 이용허락의 범위를 독립적으로 확정한 판단이 아니라 제3자인 D 회사가 밝힌 입장이므로 이 진술만으로 A 씨가 허락한 구체적인 이용범위를 확정하기는 어려움. 비록 강의자료를 적법하게 구매하거나 일정한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료를 수정, 복제, 배포할 권한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편집저작물의 이용허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료의 취득 사실과 저작권자가 허락한 구체적인 이용범위를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4. 시사점

본문의 판례는 공개된 법령·정책·업무자료를 주된 소재로 하는 교육용 강의자료라도 특정한 교육 목적에 맞춘 정보의 선별과 단계적·구조적 배열이 창작자의 개성적 판단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판례
(2025)沪0116民初14266号
(2022)京73民终4681号